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교육부

단체교섭 절차합의서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교육부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단체교섭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교섭 내용, 교섭 일시·장소, 그 밖에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섭의 운영) ① 교섭 절차는 본교섭과 실무교섭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본교섭에서는 상견례(개회식)와 협약체결식을 각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교섭에서 미합의된 쟁점사항의 합의를 위해 노·사 합의에 의해 1회에 한하여 본교섭을 실시할 수 있고, 협약체결식에서는 실무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③ 실무교섭에서는 교섭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고, 교섭안에 대한 합의를 거쳐 본교섭에 상정한다.

제3조(교섭 내용) ① 교섭 안건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규정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교섭 전 사전협의 절차에서 노·사가 합의한 사안에 한정한다.

② 국교조에서 기 제출한 교섭요구안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본교섭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단, 교섭안을 수정 또는 추가할 경우 합의 등에 필요한 일정을 고려하여 본교섭 일자를 양측 간 협의하여 다시 결정한다.

제4조(실무간사 선정 및 역할) ① 노·사 양측은 각각 1명을 실무간사로 선정한다.

② 실무간사는 본교섭과 실무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섭일시, 교섭 장소, 교섭 진행 절차 및 교섭 진행 방식, 회의록 채택 및 보관, 기타 교섭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③ 실무간사 명단은 교섭위원 명단과 함께 통보하기로 한다.

제5조(교섭일정) ① 본교섭은 단체교섭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종료된 후, 노·사가 상호 합의한 일시에 개최한다.

② 실무교섭 주기는 월1회 내지 2회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정해진 일자에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측 간사 간 협의에 의해 연기된 실무교섭 일자를 정한다.

제6조(교섭위원) ① 본교섭의 교섭위원은 노·사 양측 각각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본교섭 시 교섭대표는 교육부장관과 국교조위원장으로 한다.

③ 실무교섭은 노·사 양측 각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실무교섭 시 교육부 대표위원은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실·국장 또는 해당 과장으로 하고, 국교조의 대표위원은 정책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교섭위원 통보 및 교섭 성립요건) ① 노·사 양측은 교섭위원 명단을 교섭예정일 7일 전까지 상대측에게 통보하되, 이후에는 변동 시에만 2일 전까지 통보한다(교섭위원 명단에는 소속 기관 및 단체 또는 학교, 직위, 성명,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에 양측은 상대방의 교섭위원에 대하여 소속 직원 및 조합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와 국교조 중 일방의 사정으로 정해진 기일에 교섭을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 2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기 교섭일정은 간사 간 합의로 정한다.

제8조(교섭시간 및 장소) ① 교섭시간은 1일 3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사 양측의 협의에 의해 2시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② 교섭(본교섭, 실무교섭)의 장소는 양측이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무간사의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진행 방식) ① 본교섭과 실무교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양측의 합의 하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② 본교섭과 실무교섭 시, 상호 발언을 기록하여 추후 확인하기 위해 속기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③ 노·사 양측에서는 자율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으나 녹화·녹취는 상호합의하에 진행할 수 있다. 단, 속기록이나 녹취 내용은 합의서에 우선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 해석상의 근거 자료로만 사용한다.

④ 매회 실무교섭 및 본교섭이 종료되면 양측 간사는 3일 이내에 합의사항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⑤ 배석자 수는 노·사 양측 각각 10인 이하로 하되, 노사양측 사전 합의에 의해 참석할 수 있다. 배석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단, 외부용역 속기사는 배석자 수에 불포함).

⑥ 내부 의견 조율이나 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회할 수 있다.

제10조(본교섭 진행절차) ① 본교섭(상견례[개회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사회는 교육부 측에서 맡는다).

1. 개회(사회자)
2. 국민의례(사회자)
3. 성원보고(사회자)
4. 경과보고(사회자)

5. 교섭위원 소개 및 교섭대표위원 인사(사회자)
6. 단체교섭 의제(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국교조)
7. 단체교섭 의제(요구안)에 대한 교육부 입장 설명(교육부)
8. 폐회

② 본교섭(협약체결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사회는 교육부 측에서 맡는다).

1. 개회(사회자)
2. 국민의례(사회자)
3. 성원보고(사회자)
4. 실무교섭 경과보고(사회자)
5. 노·사 교섭대표위원 인사
6. 단체협약 체결식
7. 폐회

제11조(실무교섭 진행절차) 실무교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사회는 노사 양측이 번갈아 맡기로 한다).

1. 개회 및 국민의례(사회자-생략 가능)
2. 대표위원 소개 및 교섭대표위원 인사
3. 전차 합의사항 확인
4. 안건 심의
5. 합의사항 상호 확인
6. 차기 교섭 일정 조율 및 안건 예고
7. 폐회

제12조(의사진행 규칙) ① 교섭 담당자는 신의성실 원칙하에 성실히 교섭에 임하며 상대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의사진행순서는 노·사 양측이 교대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보충발언을 할 수 있다.

③ 발언은 제안, 질의, 답변, 보충질의, 답변 순으로 한다.

④ 교육부는 실무교섭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다음 교섭 시 설명하고, 이후 교섭을 실시한다.

⑤ 노·사 양측의 교섭 참가자는 “교섭위원”으로 호칭한다.

제13조(합의서 해석) 합의서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사 양측 간 합의에 의해 결정한 바에 따르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1. 3. 23.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정책위원장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고등교육정책과장

권오현

송근현